

【붙임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2025. 4.

목 차

I. 지원사업 공모	1
1. 사업개요	2
2. 지원기준	4
3. 사업신청 및 절차	8
4. 보조금 교부 관련사항	16
5. 사업지원 및 관리 등	19
6. 주의사항	22
[첨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용도	23
II. 서식 및 참고	24
[서식1] 시그니처사업 추진현황 보고	25
[참고1] 지원 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	28
[참고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세부절차	30
[참고3] 그린리모델링 표준설계도서	31
[참고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정산 방법 및 세부절차	32
[참고5]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사업	36
[참고6] 시그니처 사업 사례	38
[참고7] 그린리모델링 종합시공사례(청주의료원, 삼척시보건소)	40
[참고8]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사례(광명 구름산어린이집)	43
III. Q&A	45

I . 지원사업 공모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23. 4.)하고,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속적 추진*

* ('22년 누적) 약 7.3만건 → ('30년 목표) 약 160만건

- (사업목적)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 유도

□ 지원사업 주요내용

- (사업명) 2025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운영고시”)
- (사업시행)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위탁시행
- (사업규모) 총 1,145억 (국고보조사업비 예산기준)
- (대상모집) 별도 공지예정
- (주요내용) 공공건축물 중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서관, 보건소, 경로당, 기타노유자시설, 기타교육시설, 기타공공시설을 대상으로
 -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 실시 후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자격 및 대상 세부기준 가이드라인 본문 P.4~7 참조

○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 사업규모 또는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27. 12. 31.)까지 이월*가능

* 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월 또는 재이월 시 중앙관서(국토교통부)의 장의 인정·승인 필요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제2항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업운영 체계 및 역할

- (운영체계) 국토교통부가 정책·사업 총괄, 국토안전관리원은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운영 및 관리, 지원
- 중앙행정·공공기관 및 광역지자체는 1차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추진 (광역지자체의 경우, 기초지자체에 대한 사업관리 포함)
- 기초지자체는 2차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추진

구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국토교통부)	○ 정책·사업 수립 등 총괄
▼	
운영기관(국토안전관리원)	○ 보조사업자로 사업 기획·공고·선정·관리 등 업무 운영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사업추진기관(중앙·공공 및 광역)	○ 1차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추진 또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기초지자체 사업관리
▼	
사업추진기관(기초지자체)	○ 2차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추진 (사업신청, 교부신청, 사업변경, 정산 등에 대한 업무는 광역지자체를 통하여 진행 필요)

2. 지원기준

□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자격)

-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하 “사업대상기관”)

*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제외

제2조(정의) 5.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바.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3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제외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4항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2. 동법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도서관, 보건소, 경로당, 기타노유자시설, 기타교육시설, 기타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5년 1월 1일 이전) (첨부참조)

□ 지원항목 및 한도

- (지원항목) 에너지공사와 추가지원 공사로 구분하며, ❶에너지공사는 필수공사 및 선택공사, ❷추가지원 공사는 부대공사 및 기타로 구성

구 분			기술요소
에너지공사	필수공사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기계, 전기 등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Cool Roof(차열도료),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선택공사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창호기밀 절수형 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추가지원	부대공사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확보 검토 등),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단,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등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지원가능 (ex.친환경 건축 공법 및 자재, 국산 목재 사용,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 등)

*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의 세부 적용 기준은 가이드라인 P.28 [참고1] 참조

- 에너지공사 중 필수항목은 최소 2개 이상 적용(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 포함)하여 사업 신청 및 지원
- 총 사업비 대비 필수공사비의 비율은 최소 40%이상, 추가지원비의 비율은 최대 30%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단, 해당요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고효율 조명(LED)의 경우, 조명밀도(W/m²)가 14미만이 되도록 설계 권장
- 창호기밀의 경우, 고성능 창 및 문 공사를 적용 시 인정
- GR 관련 설비·전기·소방 부대공사의 경우, 본 사업으로 수반되는 부대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사업과 무관한 신설 공사(배관 등)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공사 前 종합사업지원 내역에 “석면조사 필요”가 표기된 경우 석면조사 필수 신청
-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 증·개축, 대수선 등 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비의 경우, 지원 항목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경우, 사업대상선정 이후 사업 취소가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 유지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신청 필요
- 사업 선정 이후 적용 기술요소 임의변경,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미실시 등은 「보조금법」에 따라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등의 후속 조치실시 가능
- (지원한도)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 소규모건축물(연면적 300㎡미만)의 경우 순공사비 이외 제경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상향적용
 - 섬 지역*의 경우 노임,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의 20% 추가 할증 적용
 - * 「섬 발전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사업대상 당 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7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50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보조율) 사업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기본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
 -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은 지원한도 내 해당 사업비의 50%
 - 그 외 지방자치단체 지원한도 내 해당 사업비의 70%
- (시그니처) 그린리모델링 지역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광역시·도에서 희망건축물 조사 시 신청
 - 연면적·사용인원·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혜택을 다수가 누릴 수 있으며, 홍보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의 다양한 친환경·선도적 설계 및 공법*적용으로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하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 창의적인 에너지절감 설계요소, 에너지 효율 및 생산설비, 신기술 적용 등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에너지절감 기술요소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최소 1개소 이상 적용

<지원한도 및 보조율 기준>

사업	대상구분	사업대상기관	지원한도(섬지역)	보조율
일반사업	일반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서울, 중앙·공공	190만원 / 3.3㎡ (228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66만원 / 3.3㎡ (319.2만원 / 3.3㎡)	70 %
	소규모건축물 (연면적 300㎡미만)	서울, 중앙·공공	200만원 / 3.3㎡ (240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80만원 / 3.3㎡ (336만원 / 3.3㎡)	70 %
시그나처사업	일반·소규모 건축물	서울, 중앙·공공	380만원 / 3.3㎡ (456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532만원 / 3.3㎡ (638.4만원 / 3.3㎡)	70 %

※ 단,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사용하여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사유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경우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군집건축물) 동일 필지 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군집된 경우,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 신청가능

* 해당 필지 내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용도

- (복합건축물) 여러 용도가 복합적으로 혼재된 건축물의 경우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신청

- 다만, 건축물대장상 표제부의 주용도가 사업지원대상인 경우 또는 사업지원대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과반인 경우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
- 동일 건축물에 지원용도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하며, 신청 용도는 신청 면적 중 차지하는 면적이 큰 용도로 함

- (임차건축물) 임차기간이 5년 이상(2030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잔여 시 지원대상 용도의 임차면적에 한하여만 신청가능(타용도 지원 불가)

* 임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계약서 및 공사 실시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필수 추가 제출(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 (중복건축물) 이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20~'24년)의 대상건축물은 재신청 불가하나, 아래의 경우 신청 가능

- 군집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에서 별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복합건축물로서 지원받지 않은 부위 중 지원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신청 및 절차

□ 신청방법

○ (희망건축물) 일반사업*에 대한 전자공문 접수**(수신: 국토안전관리원 녹색건축실(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25년 시그니처사업은 '24년 지역거점플랫폼에서 희망건축물 사전발굴 완료

** 중앙·공공기관: 직접 신청, 기초지자체: 광역시·도에서 취합·승인 후 신청

○ (본 사업)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접수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 <https://www.greenremodeling.or.kr>

- (회원가입) 홈페이지 내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이하 “GR 관리시스템”) 별도가입*

* 중앙·공공기관 : 시스템 가입 후 관리원 승인 필요

광역지자체 : 별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승인필요

- (모집기간) 별도 공지예정

- (신청절차)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고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하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시스템을 통한 기초지자체 사업신청 시 광역시·도의 승인이 필요

☞ 시그니처사업 : '24년 지역거점플랫폼에서 사전 발굴한 대상으로 별도 신청서 작성 필요

※ '25년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컨설팅 건축물에 한하여 본 사업공모 참여 가능

□ 사업 신청 주요 절차

단계	주관 기관	주요 내용	일 정
사전공고 및 희망 건축물 접수	사업 대상 기관	· 본사업 공모 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검토 등 사업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공사 전 종합 사업지원 대상 모집 · (중앙·공공) 첨부 서식을 참조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전자문서 신청 · (기초지자체) 첨부 서식을 참조하여 기초지자체의 신청 취합 후 광역시·도에서 신청승인	'24.12.16(월) ~ '25.1.3(금)
↓			
사업 공고	GR 창조센터	· '25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25. 3월
↓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GR 창조센터	·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 대상 공사 전 종합 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에너지절감효과 분석 등)	'25. 2 ~5월
↓			
본사업 공모	GR 창조센터, 종합사업지원 기관	· '25년도 그린리모델링 본사업 공모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 · 종합사업지원 컨설팅 보고서 시스템 입력 (공사 개요, 공사요소, 공사비 등)	'25. 4월
↓			
사업 신청	사업 대상 기관	· 컨설팅 보고서를 활용하여, 공사항목 및 사업비, 지방비 매칭 등 검토 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 등 관련양식 작성 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신청절차 는 희망건축물 접수와 동일)	'25. 4 ~5월
↓			
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 GR 창조센터	· 가이드라인 배점표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예비순위* 선정 * 사업취소 등 발생 시 선정된 예비순위에 따라 대상 추가 선정 · 대상선정 결과 사업대상기관 알림	'25. 5월
↓			
보조금 신청	사업 대상 기관	· 대상확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 작성 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 : https://www.gosims.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25. 6월
↓			
보조금 교부	GR 창조센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확인 후 보조금 교부*(1,2차 분할) * 교부절차 : 국토교통부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대상기관 또는 (광역시·도→기초지자체) **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추가 교부금 지급	'25. 7월

* 그린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 : <https://www.greenremodeling.or.kr>

* 세부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대상선정 기준

- (선정기준)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검토 후 선정
- (유사·중복검증)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에 따라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를 기준으로 검토를 수행
- (공사예정여부) 사용자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외 사업(내진보강, 기능보강, 유지보수 등) 예정의 경우
* 종합적 시공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사례 P.40 [참고기] 참조

○ (우선순위선정)

- (일반사업) 에너지절감 요소와 건축물 노후도, 사업성 및 적정성 등을 배점기준표에 따라 계량화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 아래의 순서 기준으로 우선 선정

- ① 공사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의 절감량이 많은 경우 우선
 - ② 공사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이 높은 경우 우선
 - ③ 신규 지원대상용도(도서관 기타노유자시설 및 기타교육시설, 기타공공시설)에 따라 우선
 - ④ 사업대상기관에서 소유하는 건축물 우선
 - ⑤ 에너지 절감요소 합산 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
 - ⑥ 사업관리 감점이 없는 경우 우선
 -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그니처*) 일반사업의 배점기준표 점수(표1 참고)의 40%와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정성평가** 6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 일반사업 배점기준표 점수가 높은 사업순으로 우선 선정

* 시그니처 사업 중 '25년 지원용도에 한하여는 일반사업으로도 신청 가능

**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지원대상결정) 우선순위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해당 국고보조금을 매칭하여 '25년도 예산한도에서 지원대상을 결정
- (대상선정절차) 사업접수(대상기관) → 우선순위산정·보고(배점기준표, GR센터) → 시그니처 사업, 지방비 부담능력 등 고려 선정(국토부, 심의위원회)
- (배점기준표*)
 - (일반사업) 그린리모델링 요소 적용 계획 및 건축물의 노후도·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요소 80점, 사업여건 20점으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가점 13점 및 감점 10점 부여(표1 참조)
 - 가점을 받은 경우, 사업 추진시 해당 항목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기관에서는 충분한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을 신청요망
 - (시그니처) 시그니처 사업의 추진 목적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 60점 및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40점으로 구성

《시그니처 정성평가 기준》

심사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 타당성 (60점)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한 적정성		10
		대상 건축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10
		그린리모델링 지역확산 거점의 활용성		10
	사업의 우수성	컨설팅안의 독창성 및 창의성		10
		컨설팅안의 지역특성 반영 적정성		10
		친환경·선도기술 적용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40점)	사업의 현실성	사업 추진 기간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의 기대효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속가능성		10
		사업 홍보효과의 우수성		10
합 계				10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표1.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 선정 배점 기준 (일반사업)》

구 분		총점	배점기준(적용비율)					
에너지 절감 요소 (그린리모 델링 요소 적용 계획)	단열 ¹⁾	17점	벽 (10점)	10	8	6	4	2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3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지붕 (5점)	5	4	3	2	1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20%미만
			바닥 (2점)	2	1			
				50%이상~ 100%이하	항목적용~ 50%미만			
	창호	15점	창 ²⁻¹⁾ (10점)	10	8	6	4	2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20%미만
			문 ²⁻¹⁾ (3점)	3	2	1		
				60%이상~ 100%이하	30%이상~ 6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일사조절장치 ²⁻²⁾ (2점)	2	1			
				50%이상~ 100%이하	항목적용~ 50%미만			
	기밀 ³⁾	3점	창호주변	3	0			
				적용	미적용			
	설비 ⁴⁾	10점	냉방 (4점)	4	3	2	1	
				85%이상~ 100%이하	60%이상~ 85%미만	45%이상~ 60%미만	항목적용~ 45%미만	
			난방 (4점)	4	3	2	1	
				85%이상~ 100%이하	60%이상~ 85%미만	45%이상~ 60%미만	항목적용~ 45%미만	
			급탕 (2점)	2	1			
				50%이상~ 100%이하	항목적용~ 50%미만			
	신재생 ⁵⁾	5점	태양광 등	5	4	3	2	1
				20%이상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5%이상~ 10%미만	항목적용~ 5%미만
	환기 ⁶⁾	5점	폐열회수 환기장치 또는 공조기	5	4	3	2	1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20%미만
전기 ⁷⁾	2점	고효율 조명 LED	2	0				
			적용	미적용				
에너지 절감률 ⁸⁾	10점	요소 적용시 에너지절감률	10	8	6	4	2	
			30% 이상	25%이상~ 30%미만	20%이상~ 25%미만	15%이상~ 20%미만	15% 미만	
선택 공사 ⁹⁾	8점	BEMS 적용 ⁹⁻¹⁾ (2점)	2	0				
			적용	미적용				
		세부항목 선택개수 ⁹⁻²⁾ (6점)	6	5	4	3	2	
			5개	4개	3개	2개	1개	
인정 ¹⁰⁾	5점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예정 시						
소계	80점							

구 분		총점	배점기준(적용비율)				
사업여건 (노후도 및 사업 적정성)	소유 ¹¹⁾	5점	건축물 직접 소유시(건축물대장 증빙)				
		3점	건축물 임차시(계약서 증빙)				
	노후도 ¹²⁾	10점	1993년 이전 건축허가				
		8점	1994~2000년 건축허가				
		6점	2001~2008년 건축허가				
		4점	2009~2010년 건축허가				
		2점	2011년 이후 건축허가				
	사업 효율성 ¹³⁾	5점	5	4	3	2	1
120이상			120미만~ 90이상	90미만~ 60이상	60미만~ 30이상	30미만~ 0이상	
소계		20점					
총계		100점					
가점	안전성 ¹⁴⁾	5점	5년 내 안전점검 결과*** (보통, 미흡) 해당 시				
	기술 선도 ¹⁵⁾	3점	3	2	1		
			요소 3개 이상 적용	요소 2개 이상 적용	요소 1개 이상 적용		
	사업 적극성	1점 ¹⁶⁻¹⁾	제4회 지자체 녹색건축 평가에서 각 분야별 우수평가를 받은 지자체				
		2점 ¹⁶⁻²⁾	사업완료 후 관리를 위하여 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 예정 시				
		2점 ¹⁶⁻³⁾	지방비 매칭 비율을 초과하여 추가 사업비를 사업대상기관에서 확보한 경우				
소계		13점					
감점	사업 관리 ¹⁷⁾	-5점	이전('20~'24년) 사업 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해당 기초지자체 대상 중 단순취소 사업이 있을 시				
		-3점	3	2	1		
			임의사업변경 건축물 10개 이상	임의사업변경 건축물 10개 미만~5개 이상	임의사업변경 건축물 5개 미만~1개 이상		
			-2점	공사완료('20~'24년) 건축물 중 중요재산의 처분을 임의로 시행한 해당 기초지자체			
소계		-10점					

《배점기준 해설》

-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거실의 외벽, 최하층 바닥, 최상층 반자 또는 지붕 각각의 면적 대비 실제 단열공사를 적용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단, 최하층 바닥의 경우, 최하층 바닥부분만 아니라, 각층 바닥에 난방공사를 시행할 경우도 포함하며, 이때, 기존 전기저항식 바닥난방을 교체하는 경우 (신설 제외)도 포함

(예시) 단열배점 산정예시

① 거실의 외벽면적(A) : 200 m², 최상층 지붕 면적(B) : 100 m², 최하층 바닥 면적(C) : 100 m²

② 실제 외벽 단열공사 면적(A') : 200 m², 최상층 지붕 면적(B') : 50m², 최하층 바닥 면적(C') : 40m²

③ 벽체단열 : $A' / A \times 100 = 200 / 200 \times 100 = 100\% \rightarrow 8점$

지붕단열 : $B' / B \times 100 = 50 / 100 \times 100 = 50\% \rightarrow 3점$

지붕단열 : $C' / C \times 100 = 40 / 100 \times 100 = 40\% \rightarrow 1점$

⇒ 단열 총점 : 12점

- 2-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거실의 창 및 문 각각의 면적 합계 대비 실제 창 및 문 공사를 적용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 2-2) 남측 또는 서측 방향의 창호면적 대비 외부 차양장치(내부 블라인드 제외)를 설치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예시) 창호 배점 산정예시

가. 창 배점

- ①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전체면적 : 90 m²,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 전체면적 : 10 m² →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창 총합계면적(A) 총 100 m²
- ② 실제 창 공사 면적(B): 직접면하는 창 50 m²
- ③ $B / A \times 100 = 50 / 100 \times 100 = 50\% \rightarrow 6\text{점}$

나. 문 배점

- ① 외기에 직접 면하는 문 전체면적 : 17 m², 외기에 간접 면하는 문 전체면적 : 3 m² →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문 총합계면적(A): 총 20 m²
- ② 실제 문 공사 면적(B): 직접면하는 창 17 m²
- ③ $B / A \times 100 = 17 / 20 \times 100 = 85\% \rightarrow 3\text{점}$

다. 일사조절장치 배점

- ① 남측 창호의 전체면적 : 80m², 서측 창호의 전체면적 : 20m² → 남측·서측 창호의 총합계면적(A) 총 100 m²
- ② 남측 외부 차양장치 면적: 50m², 서측 외부 차양장치 면적: 0m² → 남측·서측 외부 차양장치 총합계면적: 총 50 m² (B)
- ③ $B / A \times 100 = 50 / 100 \times 100 = 50\% \rightarrow 2\text{점}$

⇒ 창호 총점 : 11점

- 3) 그린리모델링 공사시 창호 둘레에 기밀 시공을 적용할 경우 배점 산정. 단, 해당 항목 신청 시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종합사업지원에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정산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 제출 필요
- 4) 기존 설비 장비의 내구연한이 5년 이상 경과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 설비 장비 각각의 총용량 대비 교체되는 설비 장비의 용량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다만, 추가되는 장비의 경우, 기존 설비 장비 및 교체되는 설비 장비 용량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며, 냉난방기 겸용 장비에 대하여는 각각 반영하여 산정. 또한, 지역난방의 경우, 열교환기 교체도 포함

(예시) 설비공사 배점 산정예시

- ① 에어컨 사용기한 6년: 실외기 용량 10 KW × 2대,
→ 기존 냉난방장치의 용량(A) 총 20KW
- ② 교체되는 장비 1대 (B): 10KW
- ③ $B / A \times 100 = 10 / 20 \times 100 = 50\% \rightarrow 3\text{점}$

- 5) 신규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립률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기존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
- 6)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공조기에 대한 기술요소를 신규로 적용할 경우, 해당 기술 요소가 적용되어야 할 거실의 총 바닥면적 대비 실제 기술을 적용하는 실의 바닥 면적 비율로 배점 산정

(예시) 환기 배점 산정예시

- ① 교사실 : 10 m², 보육실 : 60 m², 유희실: 30 m²
→ 폐열환기형 환기장치가 적용되어야 할 바닥면적 총합계면적(A) 총 100 m²
- ② 실제 적용 기술 면적(B): 보육실 60 m²
- ③ $B / A \times 100 = 60 / 100 \times 100 = 60\% \rightarrow 4\text{점}$

- 7) 고효율 조명 LED 설치 유무에 따라 배점 산정. 기존 LED를 교체하는 경우 제외하며, 전체 조명밀도는 14 W/m^2 미만이 되도록 설계

(예시) 고효율조명(LED) 배점 산정예시
가. 기존 형광등에서 LED 교체 시 → 2점

- 8)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선전·후(안)의 에너지요구량 또는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에 대한 비율로 배점을 산정

(예시) 에너지절감률 배점 산정예시
가. 개선전 1차에너지소요량 : $220\text{kWh/m}^2 \cdot \text{y}$, 개선후 1차에너지소요량: $180\text{kWh/m}^2 \cdot \text{y}$
→ 에너지 절감률: 18%
⇒ 에너지절감률 점수 : 4점

- 9-1) 그린리모델링 공사지원 항목의 선택공사 중 BEMS(Light BEMS, 원격검침기 포함)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9-2) 그린리모델링 공사지원 항목의 선택공사의 적용 개수에 따라 배점 산정. BEMS(Light BEMS, 원격검침기 포함) 및 일사조절장치는 개수에서 제외

(예시) 선택공사 배점 산정예시
가. 선택공사 중 BEMS → 2점
나. 선택공사 중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선택 → 3점
⇒ 선택공사 점수 : 5점

- 10)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예정을 선택할 경우 배점 산정. 공사 후 1개월 이내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녹색건축물전환을 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승인 필요
11) 사업대상시설의 소유여부에 따라 배점 산정하며, 임차의 경우, 계약서 및 소유주의 공사 진행 동의서 필수 제출
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지역, 부위별 열관류율 변경 기준
13)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률(kWh/년) ÷ 총사업비(백만원)(단, 추가투입되는 지방비를 산정 시 제외)
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상의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보고서 결과(안전등급 : C,D 또는 보통,미흡)에 따라 가점 추가
15) BIPV 또는 SOLAR tree, 소형 풍력, ESS, 광덕트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인 기술을 선택하는 개수에 따라 배점 산정
16-1) 2024년 지자체 녹색건축평가('23년 기준)에서 “녹색건축확산, 에너지성능, 정책이행도” 각 분야에서 우수로 평가받은 지자체인 경우. 단, 분야별 중복인정 되지 않음(평가결과는 <https://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 가능)
16-2) 그린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전기, 가스 등 실제 에너지 사용량 확인을 위하여 계량기 보급사업 실시할 경우, 참여예정인 건축물
16-3)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에 의한 지방비를 초과하여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

(예시) 추가사업비 확보 예시(서울의 경우)
가. 그린리모델링 총 사업비 5억 →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나. 사업대상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0.5억 추가 확보 → 국비 2.5억, 지방비 3억 투입
⇒ 가점 1점 획득

- 17) '24년 심의위원회에서 단순 취소 또는 임의사업변경이 확인된 기초지자체의 경우 또는 '20년~'24년 사업 중 공사완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을 임의로 시행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단, 광역단체 및 중앙·공공 소속 건축물의 경우, 그 단위별 관리 건축물에 대한 감점 시행)

4. 보조금 교부 관련 사항

□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일반사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목적*을 확인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

*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

- (보조금 교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사업선택 후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 ⑦ 보조금교부(1차 80%, 2차 20% 분할 교부) → ⑧ 사업비 변경(필요시) → ⑨ 사업비 정산 → ⑩ 정산잔액 반납

- (보조사업 변경) 보조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1.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 취소) 대상선정 이후 사업취소는 불가하며, 「보조금법」 제21조에 따른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취소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사전 승인 필요 (임의 추진 시 보조금 반환 등 처분 결정)

사정의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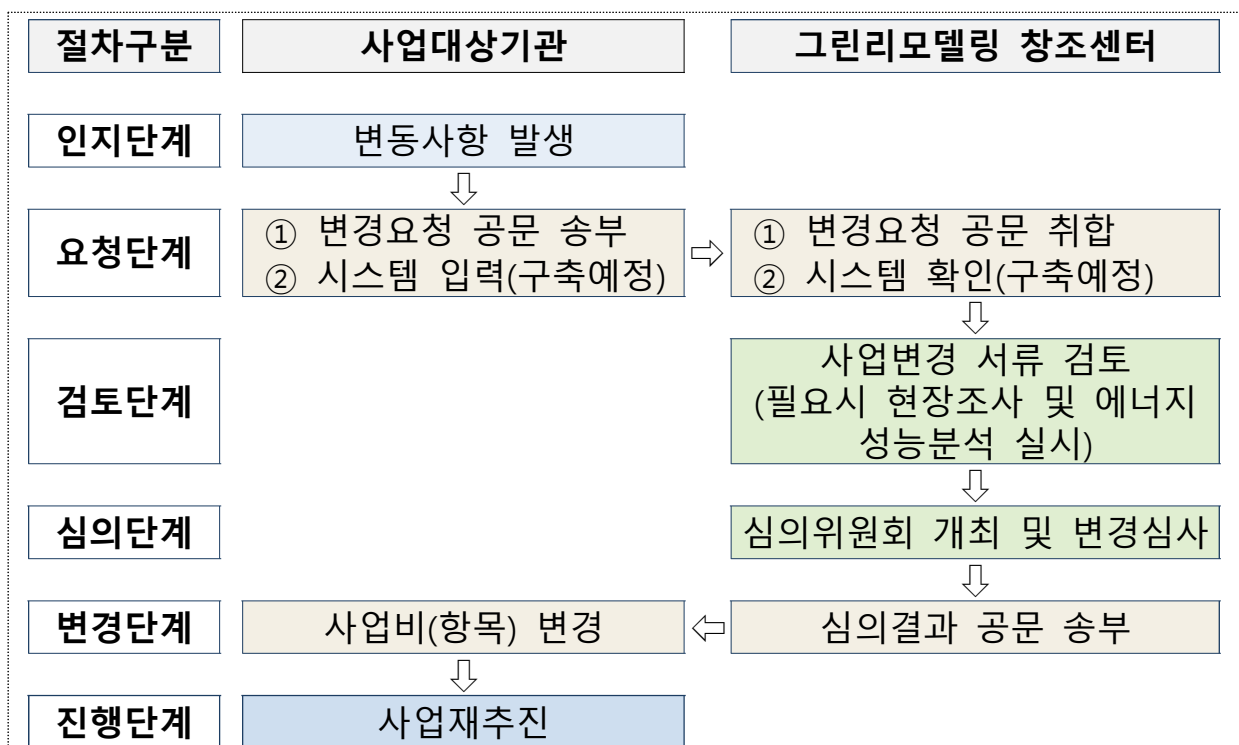
1. 대상 선정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 구역 또는 정비 사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상 선정 이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판정받아 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3. 대상 선정 이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4. 대상 선정 이후 대상 시설물의 사용자 수의 변화에 따라 폐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취소의 사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 시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변경 절차) 국고 보조사업 내용의 중대한 변경*은 사전에 아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세부가이드라인 별도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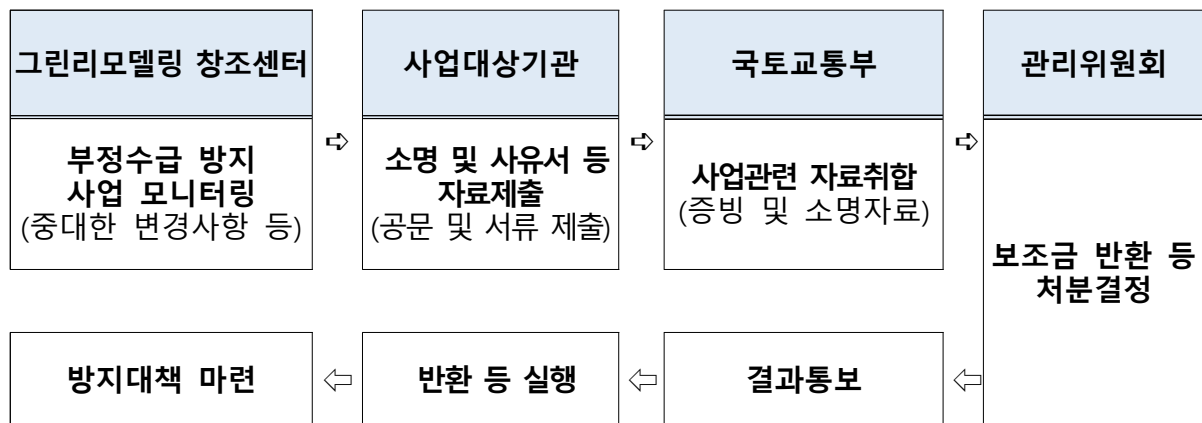
* 중대한 변경이란? 에너지공사 사업비의 비율이 20%이상 감소하거나 필수공사 적용계획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동일 필수 공사 내의 변경에서 에너지 성능 확보가 동등 이상의 경우 제외한다. [운영지침-제6호 서식] 참조



-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법」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규정된 부정수급 방지 및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을 결정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절차>



* 보조금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내 절차를 준용

- (보조사업 정산) 「보조금법」 제27조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회계연도 후 지정기한 내 제출**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재원별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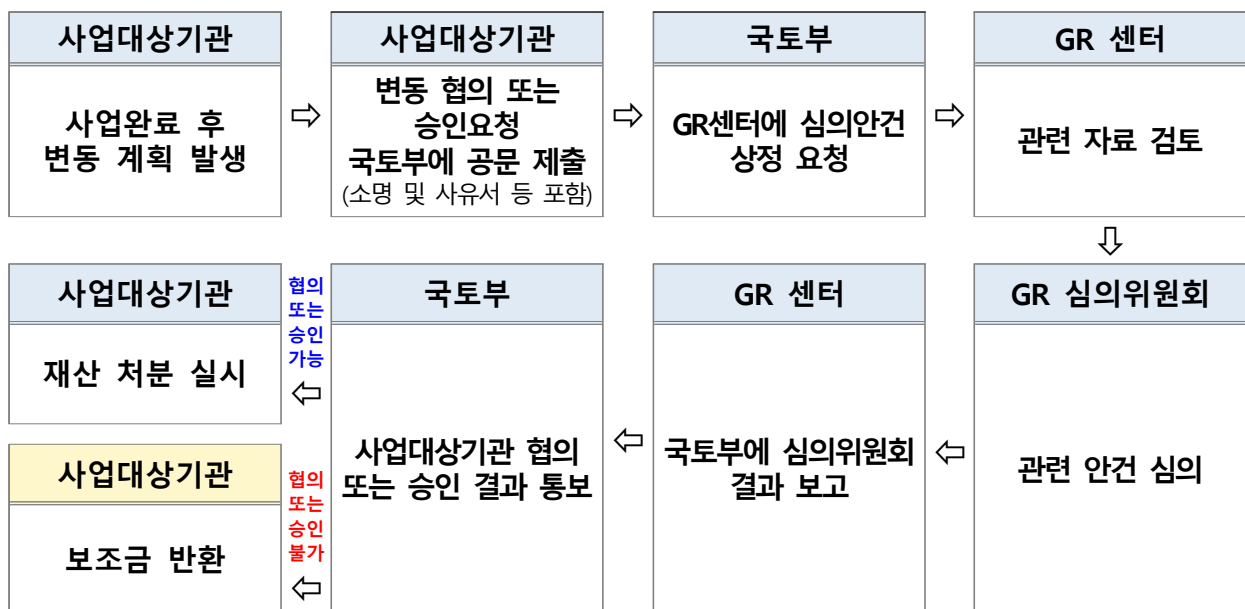
** [운영지침-7호 서식] 참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 세부방법 및 절차는 P.32 [참고4] 참고

- 공사 완료 시 각 권역별 종합사업지원 전문기관에 준공 후 현장 점검 요청
- 최종 공사도면, 공사내역서, 관련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GR 관리시스템 정산보고서 제출 및 e나라도움* 정산실시
 - *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정산 실시하며, 정산 시 광역승인 必
- 정산잔액 등에 대하여 사업비 잔액과 사업예산에서 발생한 이자로 분리하여 지정계좌에 반납(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6조에 따라 ‘중요재산 현황’ 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준공 후 5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 (처분의 제한)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 후 사업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용도 외 사용, 휴·폐업,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및 철거의 행위를 5년 동안 제한
 - 보조사업 후 처분제한 기간 내에 재해·재난에 따른 건축물의 기능상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철거 등 특이사항에 따른 처분 전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및 승인필요
- * 지자체가 소유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사전협의 가능, 관리하는 건축물은 사전승인 대상
- 처분의 제한 관련 세부기준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며, 임의 처분으로 판단 시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제재부과금 징수 등 처분을 결정

<사업완료 후 대상지 변동사항 협의 또는 승인 절차>



※ 중앙·공공의 경우, GR센터로 직접 공문 제출

※ '20~'24년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절차 적용

5. 사업지원 및 관리 등

□ 사업수행

- (설계 및 공사계약) 사업선정기관에서 그린리모델링 설계, 공사 수행을 위한 설계사·시공사 등을 선정하여 용역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용역시행

** 사업추진 시 사업선정기관이 직접 추진해야하며 민간 위탁 등 보조금 위탁 행위는 금지

-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 진행
-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필요건축물의 경우 GR종합사업지원 업체에서 업무 지원가능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가이드라인」 및 「그린리모델링 품질·안전 가이드라인」 참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게시)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양식을 사업별로 변경 후 활용가능

※ 설계공모가 필요한 경우(설계비 1억이상) 공모대행비에 대한 국비 활용 가능

- (용역 발주·관리) 용역계약 후 착수 시 선급금(용역비의 70%이내) 지급 후 준공 시 잔액(선급금 제외) 지급 등 설계 및 공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과 목적에 따라 완공될 수 있도록 발주·관리
- (품질관리) 사업선정기관은 설계·시공 시 당초 계획한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및 관리감독 철저
- 에너지 적용 기술 요소(단열공사, 창호공사 등)의 기밀성 확보를 위한 적정 공정 및 단가 반영
- 설계 시 에너지공사와 관련된 기본 설계 도서 작성 권장([참고3] 참고)

□ 사업지원 및 관리

- (사업지원) 사업수행 중 기술적 지원 및 자문 필요 시 종합사업지원 수행기관을 통해 ONE-STOP 솔루션 제공

※ 사업선정기관은 각 권역별 종합사업지원 수행기관의 지원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변동관리) 사업관리 중 설계 및 공사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간접보조사업자(지자체·공공기관)는 보조사업자(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게 변동발생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할 의무*가 있음
 - * [운영지침-제6호 서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신청서”를 전자공문 제출 시 사업변경 절차를 준용하여 중대한 변경여부 판단
- (사업비전용) '25년도 사업선정기관(지자체·중앙행정·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단위* 별로 사업비 전용** 가능
 - * 기초 지자체 단위, 중앙행정 - 해당 행정기관, 공공기관 - 해당 공공기관
 - ** 단,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변경 승인 절차 진행 필요하며, 단순 사업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비는 반환이 원칙으로 전용불가
- (공정관리) 사업선정기관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요청에 따라 사업진행단계 및 담당자 등 사업현황의 주기적*인 현행화에 적극협조
 - * GR 관리시스템을 통해 월별세부추진현황 제출하며, 시그니처 사업의 경우 매작수달마다 추진 별도 제출 (p25. 서식1 참고)
- (수행점검) 그린리모델링 국고보조금 집행 및 사업신청에 대한 수행내용 확인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사업선정기관을 대상으로 수행점검 실시 예정(대상지는 별도 통보)
- (사업평가) 그린리모델링 분야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전·후 에너지소요량 절감률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및 안전점검 실시 예정
- (사업결과) 보조금 정산 시 사업 실적보고서, 설계도서, 지원항목의 세부내용*에 대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
 - *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의 세부내용 기준 [참고1] 참조
- (사후관리) 공사 전·후 전기, 가스, 난방 등 실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수집 가능

6. 주의사항

- (사업추진) 모든 사업추진 관리*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관리시스템 통하여 관리되므로,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진행 필수

* 매월 세부추진 일정, 단계별 관련자료 보고 등

- (사업등록) 당해 연도의 사업구조를 신규로 생성하며 보조사업명을 통일하여 작성 및 이전 연도 사업과 통합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보조사업명 :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00시-경로당 0동)
- 보조형태 : 정률 체크 (정액사업 아님)

- (사업변경) 사업변경 시 종합사업지원 전문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 및 사업변경계획서 작성하여 그린리모델링센터로 사업변경 신청

- 검토의견의 경미한 사항 판단 시에도 사업변경 신청 필요

- (사업이월) 이월 시, e호조 시스템 각 부서의 예산팀과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이월금액 신청 및 편성해야 하며, 추가 집행으로 이월 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정정 요청 필요

- 해당연도에 사업구조(보조사업 생성-확정내시) 생성이 필요
- 지자체의 불용 된 예산은 재편성 불가
- 사고 이월 시, 지자체 내부 협의 필요

- (실적보고서)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하는 기한* 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필요

* 중앙행정·공공기관 : 실적보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 : 실적보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 (사업정산) 에너지 기술요소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및 사업공고문 및 가이드라인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 보조금의 목적외사용으로 불인정 될 수 있음([참고1] 참고)

-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이하 “도서관”)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이하 “경로당”)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재활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등) 및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기타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관·노인교실,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기타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59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이하 “기타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이하 “기타노유자시설(청소년복지시설)”)
-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하 “기타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하 “기타교육시설(직업훈련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사목에 따른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이하 “기타공공시설(주민공동시설)”)

II. 서식 및 참고

서식1

시그니처 사업 추진 현황 보고

【서식 1】

00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이행관리 현황 보고

☐ 사업개요

건물사진	건축물명	ex) OO 어린이집
	주소	
	연면적(㎡)	
	건축면적(㎡)	
	사용승인일	
	용도	
	구조/규모(층수)	

☐ 참여 관계자

구분	소속	담당자	연락처
지자체/공공기관	00시/ 00군		
시설 관리자			
플랫폼 담당자			
사업기술지원단			
GR 설계사			
GR 시공사			

☐ 총 사업비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신청	5,000,000	3,500,000	1,500,000	-
변경	(변경사항 발생시 작성)			

☐ 추진단계 및 주요현안

준비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사업완료
기획	설계사 선정	설계 中	설계 완료	공사 발주	공사 中	공사 완료
			✓			
주요현안	사업 일정, 사업내용, 사업비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현안 등 작성 ex) 건축 공공심의, 임시 이주시설 마련 등에 따른 사업 추진일정 지연 ex) 기술요소 적용 가능여부, 재실공사 방법 등 관계자 협의 필요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시작일	수행기간	완료예정일	완료일자	비고
준비 단계	기획	-	-	-	-	
	발주	24.08.01	-	-	-	
설계 단계	계약	24.09.01	-	-	-	
	착수	24.09.10	24.09.10 ~ 24.12.10	-	-	
	준공	-		24.12.15	24.12.15	구조안전진단 실시
	발주	25.02.01	-	-	-	
공사 단계	계약	25.03.15	-	-	-	
	착수	25.03.20	25.03.20~25.06.20	-	-	이사기간 (24.11~12)
	준공	-		25.07.10	25.06.30	
	발주	25.02.01	-	-	-	

□ 사업내용(필수 및 선택공사)

구분		추진내역	적용여부	세부내용(적용예정 또는 적용 상세)
필수 공사	건축	벽체	○	(외단열) 기존 단열재 위 T100 PF보드 적용+화강석 마감
		지붕	-	-
		바닥	-	-
		창호	○	T24로이복층유리(AL)
		문	-	-
	기계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전열교환기 5대 교체(전열교환효율 n%)
		고효율 냉난방장치	○	EHP 5대 교체 (COP 난방 : 4.3, 냉방 : 4.5)
		고효율보일러	-	-
	전기	조명	○	LED 100% 교체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옥상 설치(용량 5kW, 효율 20%)
		에너지모니터링	-	-
	기타	쿨루프	○	방수차열도료 적용
		선도기술	○	도심형 풍력발전 도입
		건축가설공사	○	외단열 보강에 의한 가설공사 적용
선택 공사	건축	조경공사	○	대지 내 관목 설치
		일사조절장치	-	내부 전동블라인드 설치
		환경선언제품 마감재	○	인증 제품 적용된 벽지 교체
	기계	스마트에어샤워	-	-
		순간온수기	-	-
		절수형기기	-	-

☐ 사업내용(기타공사)

구분	추진내역	세부내용(적용예정 또는 적용 상세)
부대공사	기존공사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 추진에 따른 철거 반영
	석면조사 및 제거	-
	구조안전보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적용
	GR관련 건축부대공사	누수에 의한 방수공사 등 적용
	GR관련 설비공사	-
	GR관련 전기공사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
기타내용	임시시설 이주	ex) 재실공사 어려워 임시시설 이주 예정(약 2달)
	불법 건축	ex) 불법건축 부분 양성화 추진
	⋮	

☐ 사업비 세부내역

구분	계약금액	낙찰금액	비고
설계비			
공사비	건축·기계		
	전기		
	관급자재1		
	관급자재2		
감리비			
구조안전보강			
이사비			
⋮			
합계			

☐ 참고자료(사진 등)

--	--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필수 공사	고성능 창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세트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커튼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밀성 창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 * 고성능 창호 교체·설치를 위한 직접 가설공사를 지원 범위에 포함
	고기밀성 단열문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고기밀성 단열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밀성 문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 * 방풍실 또는 방풍구조에 설치된 문, 너비 1.2m 이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기밀성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음
	내·외부 단열보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 적용 * 기존 단열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강하는 경우 기존 단열재의 열저항값 산입 가능 * 화재 확산방지를 위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적용(실내 단열재는 불연재료 적용 권장) * 외부 단열 교체·설치를 위한 직접 가설공사를 지원 범위에 포함
	바닥	• 바닥단열공사(내·외부 단열보강 참고) • 바닥 마감재 하부에 매립시공된 온수 배관 공사(X-L 배관 등) • 전기온돌난방공사(기존 전기방식에서 교체인 경우만 해당)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로서 KS B 6879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 •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 이상, 난방시 70% 이상인 제품 • 공기조화기 부착형 폐열회수 설비(Plate, Rotary, Heat Pipe 등)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냉동기, 보일러, 냉난방기, 열원용 펌프 등) * ‘규정범위’에 해당하는 제품(또는 사양)인 경우 인증제품의 개수와 종류가 현저히 적은 경우 인증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규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또는 사양)인 경우 인증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예.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인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등) ※ 규정범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기자재별 적용범위
	고효율 조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 • LED조명으로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 거실 조도 조성용이 아닌 특수 조명인 경우에 한하여 LED조명이 아닌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가능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적합한 태양광발전설비
	BEMS	• BEMS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12]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스템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로서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과 데이터 조회 기능을 갖춘 시스템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대상으로 함 (단, 난방유 등 비정기적으로 충전하는 에너지원에 한하여 제외 가능) * 데이터 조회기능 :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Cool Roof (차열도료)	• SPS-KPIC 5020-7316에 적합한 지붕용 태양방사 차열도료 • CRRC(Cool Roof Rating Council) 인증 제품 •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시험방법 ASTM C1549, E903, E1918)에 의한 태양열 반사율이 초기값 0.65 이상인 도료
선택 공사	창호기밀	• 창 및 문 등 개구부와 구조체의 접합부위(개구부 둘레)에 기밀테이프, 팽창테이프 또는 탄성도막(가변형방습) 제품 사용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개구부(거실의 창 및 문)의 둘레에 적용하는 제품은 공기투과성 및 투습성이 낮은 제품으로 적용하며, KS F 2607(건축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에 따른 등가공기충투과계(Sd)가 2m를 초과하는 제품 사용 • 기밀테이프는 투습방수 기능을 하는 실외측 기밀테이프와 방습 기능을 하는 실내측 기밀테이프를 제품 특성(시방서)에 맞게 적용, 건축물 구조에 따라 친환경 접착제 등 적절한 부자재 활용 * 단, 창 및 문공사를 필수공사로 적용한 경우에만 해당공사를 인정하며, 위 기준가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GR센터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이 있는 경우 인정가능
	일사조절장치	• 수평 또는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이거나 P/H 또는 P/W값이 0.4 이상인 것 • 외부 블라인드(베네시안, Roller 등) • 내부 블라인드로서 KS L 9107 규정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인 제품
	절수형 기기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제품 * 수도꼭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 대변기, 소변기
	환경성 선언 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인증받은 환경성적표지제품 또는 저탄소 제품
	조경공사	• 조경(식재) 공사로서 교목, 관목 등으로 이루어진 것(지피식물과 초화류로만 구성된 조경공사는 제외)
	순간온수기	• KS B 8116에 따른 가스 순간온수기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전기식 순간온수기 * 축열 용량 30L 이하만 순간온수기로 인정하며, 30L 초과는 고효율냉난방기 참조
	스마트에어샤워	-
	기타	•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추가 지원 가능 공사	건축분야	•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 석면 조사 및 제거 • 기타 GR관련 부대공사
		• 내진성능확보 검토, 구조안전보강 등
		•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 전기용량증설 등 관련 비용
	이주비용(이사 및 임차비), 설계비·감리비, 설계공모 대행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위 항목에 준하는 기준 적용 권장하며, 항목 중 3년 이내 개선 이력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공사완료 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한 인증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지원대상 공사 중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 가능

참고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세부절차

사업 단계	'25년 사업절차	주관기관	주요 시점	비고
I 단계 사업 대상 선정	희망건축물 대상(GR컨설팅대상) 접수	사업대상기관→ 창조센터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신청	' 24. 12월	
	'25년 공공건축물 GR사업 공고 (사업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GR 창조센터(이하 "창조센터 ")	' 25. 3월	
	희망건축물 대상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 착수	창조센터 & 컨설팅업체 &지역거점플랫폼	3월	
	사업대상기관과 사업계획 컨설팅 (지자체인 경우 광역까지 협의)	창조센터 & 컨설팅업체 &사업대상기관	2~5월	창조센터 사업관리
	'25년 GR 사업설명 (대상건축물, 절차, 일정안내)	국토부 및 창조센터, 사업대상기관	3~4월	(현황 및 현안처리)
	'25년 공공건축물 GR사업 공모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 안내)	창조센터	4월	
	사업 신청서 제출	사업대상기관→창조센터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신청	4~5월	
II 단계 국비 신청 및 교부	사업대상 심의 및 선정·통보 (사업계획 최종확정)	창조센터 및 국토부→GR대상기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통보	5~6월	
	국비 교부신청	GR선정기관→센터→국토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신청	6월	창조센터 사업관리
III 단계 사업 수행 관리 (사업 지구별)	국비 교부	국토부→센터→GR선정기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교부	6월	(현황 및 현안처리)
	설계 용역 발주등	GR선정기관	7월~	창조센터 사업관리 (현황 및 현안처리)
	설 계	GR선정기관		
	공사 발주	GR선정기관		
	착공 및 보고	GR선정기관→국토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보고		
IV 단계 사업 성과 관리	준공 및 완료 보고	GR선정기관→국토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보고	12월~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GR선정기관→국토부&창조센터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보고		
	성과 평가	창조센터		

참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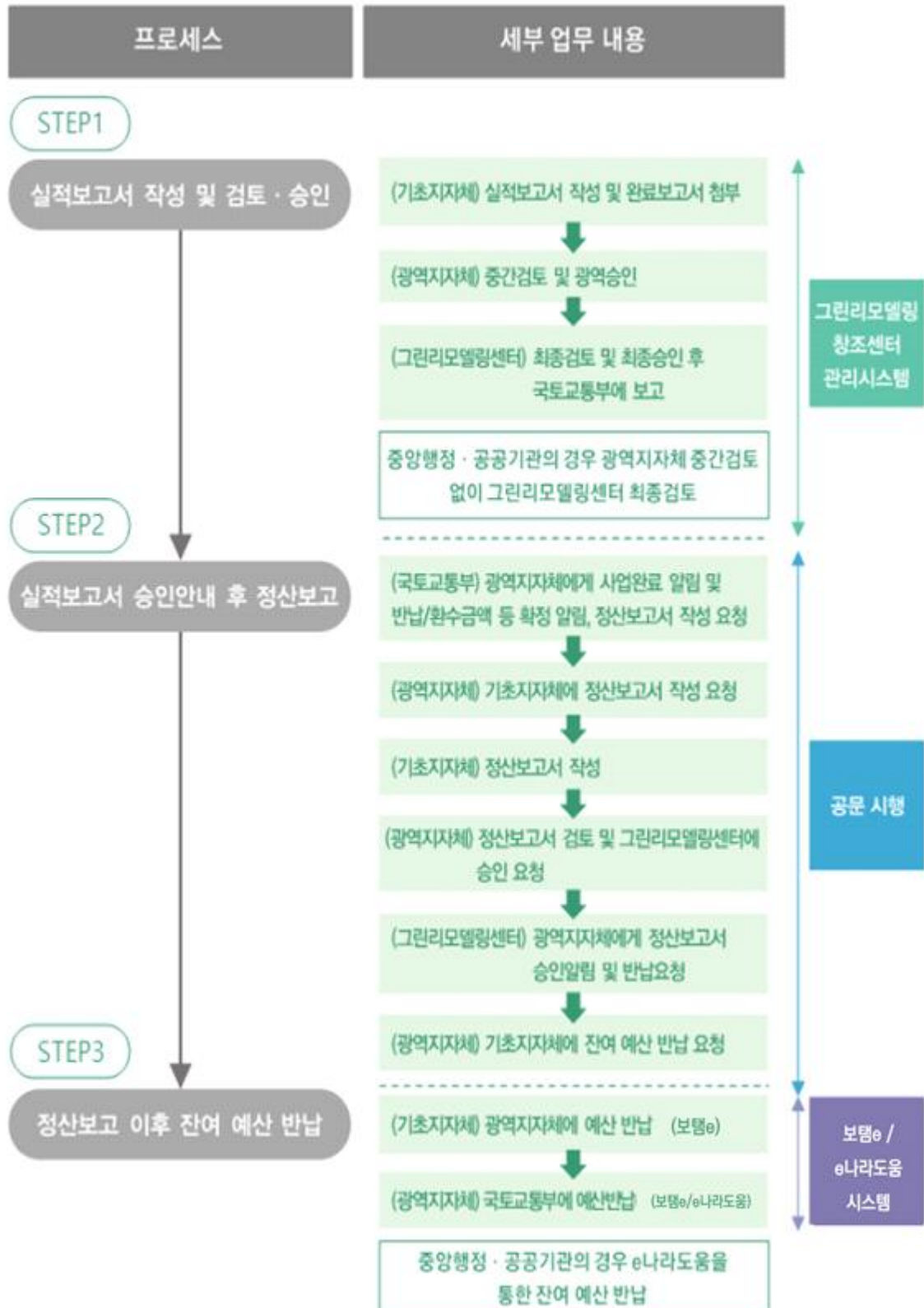
그린리모델링 표준 설계도서 항목

종 류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공통)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표지	
		도면목록표	
		설계 개요 및 일반사항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공사 전·후)	
건축	일반 도면	배치도	
		실내재료마감표	
		형별성능관계내역	
		철거평면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상세 도면	창호 일람표	창호재질, 유리두께 등 창호 사양 구체적 표기
		창호 평면도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각층 천정평면도 및 상세도	
기계	일반 도면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티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 등을 표시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 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전기	일반 도면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분전반 변경 시 상세도 포함 작성
		전력 설비 평면도	
		조명 설비 평면도(공사 전·후)	각 층별 조명수량이 확인 가능
		조명기구 상세도	

참고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산방법 및 세부절차

| 실적보고 작성 및 정산



□ (1단계)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실적보고서
○ 보조사업 사업대상기관은 사업완료시 홈페이지 내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에서 실적보고서(운영지침-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완료보고서(운영지침-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광역지자체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승인을 받습니다. - 주소 : https://www.greenremodeling.or.kr/backoffice/gate.asp

□ (2단계) 실적보고서 승인안내 후 정산보고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이월시 보조사업 사업대상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지자체인 경우 3개월)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운영지침-제7호 서식)를 이월현황을 제출합니다. ○ 사업완료시 보조사업 사업대상기관은 상위보조사업기관(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 집행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보고서(운영지침-제7호 서식)를 작성·보고합니다.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최종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합니다.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 정산 완료 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합니다.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의 관련조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합니다.

□ (3단계) 정산보고 이후 잔여 예산 반납



잔여 예산 반납-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 반납해야하는 ‘집행 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해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합니다.
 -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 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령 제13조를 따릅니다.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1.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2.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3.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1.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2.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그린리모델링센터의 승인 필요합니다.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개요

- (목적)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객관성 보장 및 높은 쾌적성·에너지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로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인증' 등 취득
- (대상기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 내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계획에 '있음'으로 신청한 기관
- (인정기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을 취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7조》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을 요구받은 건축물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1. 삭제
2. 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에너지요구량을 30% 이상 개선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30% 이상 개선하는 건축물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5.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 ① (에너지컨설팅) 지자체 등은 그린리모델링 컨설팅기관의 전문적 기술 지원을 통하여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기준에 적절한 설계 계획 수립
- ② (사업계획서) 지자체에서는 설계 계획 확정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녹색건축센터로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서류	1. 사업계획서 갑지	2. 사업계획 요약서
	3. 사업계획 및 이행계획	4. 예산 및 조달계획
	5. 성능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증빙서류	6. 기존 건축물 에너지 상태평가 결과
	7. 설계도서 등	8.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해당시)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2조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통하여 평가*하고 인정서 발급

* 평가는 인정/불인정/보완으로 구분되며, 불인정·보완 시에는 재작성 필요

- ③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 공사 완료 후 1개월 내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공문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녹색건축센터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 제출

관련 서류	1.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 갑지(참고1)	2. 사업내용 및 사업결과 요약서
	3.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제7조제1항제1호의 경우)	
	4. 성능개선 증빙자료(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계산서	- 장비용량계산서
	- 건축물 평가용 데이터시트	- 조명밀도계산서
	- 현장사진 및 설계도면	- 기타 성적서 및 인증서
	-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 고지서 사본 등
	- 건축물 전개도	
	5. 녹색건축인증서(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	
	6.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서(제7조제1항제4호의 경우)	
	7. 종합성능개선 증빙자료(제7조제1항제5호의 경우)	

- 제출된 인정신청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2조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통하여 평가하고 인정서 발급

□ 사업 배경

- 친환경·선도적 설계 및 공법* 적용을 통해 지역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표사례를 창출하여 대국민 인지도 및 홍보효과 제고

* 탄소흡수원 선순환 자재(국산목재, 바이오톱 등), 외부차양 및 집광채광루버시스템 등

□ 추진 방법

- 건물별 최적화된 시그니처 요소를 발굴하여 사업 전(全)과정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체계적 관리지원

* 권역별 지역거점 플랫폼에서 설계검토부터 시공·공사 후 성과분석까지 지원

□ 주요 사례

- 경기도 용인중앙도서관

GR 사업연도	2023년 사업(시그니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27
연면적	3,664.36㎡		건축면적	1,106.87㎡
사용승인일	1993년(32년경과)		용도	도서관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규모	지하1층 / 지상 3층
총사업비	약 66억(국비 46.6억 / 지방비 19.9억)		에너지절감률	38.0% (178.1→110.4 kWh/㎡)
공사범위	건축	벽체·바닥 외단열 보강, 지붕 내단열 보강, 창호 교체, 쿨루프 적용		
	기계	EHP 교체, GHP 설치, 전기온수기 설치		
	전기·신재생	고효율 LED 교체, 태양광 신설		
	기타	일사조절장치, 디지털 트윈		
개선전				개선후
				

○ 대전 관저보건지소

GR 사업연도	2023년 사업(시그니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300
연면적	1,066.21㎡		건축면적	524.67㎡
사용승인일	2004년(21년경과)		용도	보건소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지하1층 / 지상 2층
총사업비	약 19.4억(국비 13.6억 / 지방비 5.8억)		에너지절감률	28.6% (164.2→117.3 kWh/㎡)
공사범위	건축	벽체 외단열 보강, 지붕 내단열 보강, 창호 교체, 쿨루프 적용		
	기계	EHP 교체,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전기·신재생	고효율 LED 교체, 태양광 신설		
	기타	친환경 목재 사용, 외부 수직 루버 설치		
개선전				개선후
				

○ 대구 시립동부도서관

GR 사업연도	2023년 사업(시그니처)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북로 11길 54
연면적	7,395.62㎡		건축면적	1,665.36㎡
사용승인일	1995년(30년경과)		용도	도서관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지하1층 / 지상 4층
총사업비	약 58.4억(국비 40.9억 / 지방비 17.5억)		에너지절감률	15.0% (244.6→69.0kWh/㎡)
공사범위	건축	지붕 외단열 보강, 창호 교체		
	기계	EHP·GHP 교체,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전기·신재생	고효율 LED 교체, 태양광 신설		
	기타	하이브리드 가로등(풍력+태양광), 친환경 체험 마당 조성 등		
개선전				개선후
				

참고7

그린리모델링 종합시공사례(충북 청주의료원)

□ 충북 청주의료원 현장 사진

건축물 전경	1층 복도	옥상 히트펌프
		

□ 그린리모델링 공사내용

구분			개선 전	개선 후(공사내용)
그린 리모 델링	건축	외벽	-	외벽 일부 마감재
		창호	22mm 복층창(PVC)	39mm Low-E 삼중창(AL)
		출입문	일반문	단열문
		바닥	-	전기 필름바닥난방
		지붕	-	내단열(T140)
		구조보강	-	전단벽 보강
	기계	고효율 냉난방장치	천장형, 벽걸이	천장형, EHP
		LED	일부	전체

개선 전	개선 후
	
전단벽 보강	조감도
	

□ 강원 삼척시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개요

- (개요) '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보조 (총사업비 27.2억 / 국비 19억원)를 통해 개선공사 시행

《 삼척시보건소 현황 및 그린리모델링 개요 》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위 치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47-4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지하 0층 지상 3층
연면적	3,542.32 m ²	용 도	업무시설(보건소)
건축연도	2009	사용시간	연중 가동
구 분	그린리모델링 전		그린리모델링 후
외 관			
공사 내역	외벽·지붕	외단열(45mm)	외단열(220mm PF보드)
	외부창	5mm 단창	26mm 로이복층 유리
	냉방장치	EHP	고효율 EHP, GHP
	보일러	기름보일러	고효율 가스보일러
	조명	LED(7년경과)	LED
	환기·신재생	없음	폐열환기장치, 태양광
공사비		27.2억	

□ 효과 분석 (시뮬레이션 툴 : EC02-0D)

구 분	공사 전(A)	공사 후(B)	절감률
에너지 요구량(kWh/m ²)	87.0	44.8	48.51 %
에너지 소요량(kWh/m ²)	112.8	27.2	75.89 %
1차에너지 소요량(kWh/m ²)	192.8	28.8	85.06 %
온실가스 배출량(kgCO ₂ eq)	106,941.4	24,745.8	76.90 %
식재효과(소나무 기준)	10,148 그루		
산림조성효과(소나무 기준)	85,927 m ²		
승용차 대체효과	33.83 대/년		

□ 그린리모델링 종합 계획

필수공사

- ▶ 외벽 단열 보강
- ▶ 지붕 단열 보강
- ▶ 창호 교체 (로이복층유리)
- ▶ 단열문 교체
- ▶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 ▶ 전열교환기 설치
- ▶ LED 조명 교체

시그니처 요소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014등급에 준하는 성능 확보
- ▶ 태양광 발전설비 신설(옥상, 남쪽면)
- ▶ 신재생 발전량 모니터링 관광판 설치
- ▶ COOL ROOF 적용
- ▶ 국산 목재를 활용한 실내공간 조성
- ▶ 외부 녹지 조성
- ▶ 휴먼 휴게공간 조성
- ▶ 노약자를 위한 접근로 정비



□ 세부 개선 사항

구분	적용기술 주요내용	비고
외벽 단열	• 확인불가 ⇨ 220mm PF단열재 • 열관류율($W/m^2 \cdot K$) 0.729 ⇨ 0.156 (단열성능 79% 증가)	 0.729 $W/m^2 \cdot K$ → 0.156 $W/m^2 \cdot K$
창호	• 5mm 이중창 ⇨ 26mm 로이복층유리 • 열관류율($W/m^2 \cdot K$) 3.6 ⇨ 1.2 (단열성능 67% 증가)	 3.6 $W/m^2 \cdot K$ → 1.2 $W/m^2 \cdot K$
냉방	• EHP ⇨ 고효율 EHP • COP(성적계수) 3.23 ⇨ 3.90	 COP 2.72 → COP 3.90

□ 노후시설 안전성 확보 및 내진 보강요소 강화

그린리모델링 내진 보강요소

내진보강 기준

■ 고정하중 및 활하중
 - 고정하중 : 구조의 차등 및 건축도면상의 마감층 기준으로 파악하감.
 천장, 외부마감 등의 하중을 고려
 - 활하중 :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실효 하중을 고려

실용도	활하중	실용도	활하중
사무실	3.06 kN/m ²	다목적실	5.1 kN/m ²
배도	4.08 kN/m ²	지붕	3.06 kN/m ²

■ 적설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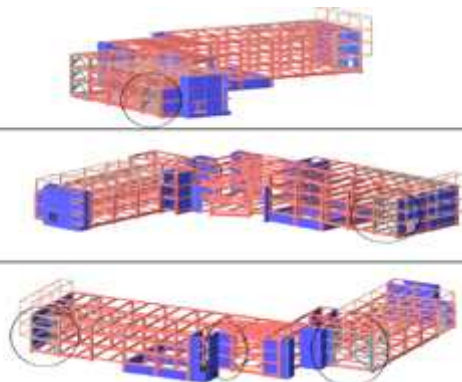
지역	강원도 산악지 냉빙형
지상적설하중	5g = 2.0kN/m ²
기본적설하중계수	0.7
온도계수	1.2

■ 풍하중

설계기본풍속	지표면조도구분
34m/sec	C
차별계수	1.0
풍온도계수	1.0

■ 지진하중

지역계수	지반의 종류
0.176	5+
풍온도계수	내진설계범주
내진능력계수	반응수정계수



참고8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사례(광명 구름산어린이집)

□ 광명 구름산어린이집

- (개요)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보조 (총 사업비 3.2억(국비 2.2억, 지방비 1.0억))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준공('21.8월)

《 구름산어린이집 현황 및 그린리모델링 개요 》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위치	경기도 광명시 가림일로 76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322.00 m ²	용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건축연도	2001	사용시간	연중 가동
구 분	그린리모델링 전		그린리모델링 후
외관			
공사 내역	외벽·지붕	외단열	외단열 + 단열 보강
	외부창	16mm AL 복층유리 단창	24mm AL 로이 복층유리 이중창
	냉방장치	PAC(전기냉방기)	고효율 EHP
	난방장치	가스보일러	고효율 가스보일러
	조명	LED 100%	-
	환기·신재생	배기팬	폐열회수장치, 태양광
공사비		3.2억	

□ 효과 분석 (시뮬레이션 툴 : EC02)

구 분	공사 전(A)	공사 후(B)	절감률
에너지 요구량(kWh/m ²)	98.8	59.3	40.0 %
에너지 소요량(kWh/m ²)	138.2	44.0	68.2 %
1차에너지 소요량(kWh/m ²)	209.6	23.0	89.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수준	1 등급	1+++등급	-
온실가스 배출량(kgCO ₂ eq)	12,417.7	1,568.9	87.4 %
식재효과(소나무 기준)	1,339 그루		
산림조성효과(소나무 기준)	11,338 m ²		
승용차 대체효과	4.46 대/년		

□ 그린리모델링 종합 계획



□ 세부 개선 사항

구분	적용기술 주요내용	비고
외벽 단열	- 외단열* ➡ T135 경질우레탄보온판 - 열관류율($W/m^2 \cdot K$) 0.62 ➡ 0.13 (단열성능 78.89% 증가)	 0.62 $W/m^2 \cdot K$ → 0.13 $W/m^2 \cdot K$
창호	16mm 복층유리* ➡ 24mm 로이복유리 - 열관류율($W/m^2 \cdot K$) 3.84 ➡ 1.60 (단열성능 58.33% 증가)	 3.84 $W/m^2 \cdot K$ → 1.60 $W/m^2 \cdot K$
냉방	- PAC* ➡ 고효율 EHP - COP(성적계수) 2.83 ➡ 2.83 - 용량 28.54 kW ➡ 52.20 kW	 COP 2.83 → COP 2.83

□ 개선 효과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

•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비교	•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비교	• 건축물 1차에너지 소요량 비교
 (단위: $kWh/m^2 \cdot y$)	 (단위: $kWh/m^2 \cdot y$)	 (단위: $kWh/m^2 \cdot y$)
[에너지 요구량] 건물이 냉방·난방·급탕·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에너지량	[에너지 소요량] 건물이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량	[1차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연료 채취·공송·변환 등의 손실을 포함한 에너지량

Q&A

Q1. 그린리모델링이란 무엇인지?

A.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친환경 리모델링을 말하며 단순 창호·설비 교체 등 개보수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포함함

Q2.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의 '준공' 기준이란?

A. 준공은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실 준공일과 사용승인 일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준공관련 서류를 증빙하면 확인 후 준공일 인정(증빙 예시: 준공검사조서 등)

Q3. 그린리모델링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는지?

A. 공사 전 종합사업관리를 신청한 건축물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전문기관(GR종합사업지원업체)을 통해 현장 조사와 설계컨설팅을 실시하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함. 대상 선정 후 사업비 교부가 되면 지자체가 설계와 공사 발주를 추진

* 공사 전 종합사업관리비는 국비로 지원하며 '25년 희망건축물을 신청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만 본 사업공모 신청 가능함

Q4. 국가로부터 일부 운영비를 보조받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소유 및 운영·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불가함.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5.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Q5. 사업비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A.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범위는 설계비와 공사비이며, 공사비의 경우, 필수공사 + 선택공사 아이টে에 대한 공사비 및 추가지원가능공사의 항목을 포함
- “서울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하 “서울·중앙·공공”)이 소유(임차 포함)한 건축물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그 밖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 지원가능
 - GR사업 건축물당 총사업비는 연면적(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비 지원가능한 총사업비 한도는 380만원/3.3㎡이고 총사업비 중 국비를 제외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 자부담
 - * 건축물대장과 상이하게 신청할 경우, 실측면적 도면 등 별도증빙서류 필요
 - 서울·중앙·공공*의 경우 건축물당 190만원/3.3㎡(380만원×50%)까지 국비 지원가능
 - * 서울 : 서울특별시, 관할 구, 산하 공공기관 / 중앙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공공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단, “서울시 외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제외)
 - 그 외* 266만원/3.3㎡(380만원×70%)까지 국비 지원가능
 - * 그 외 : 서울시 외 지자체, 관할 시군구, 산하 공공기관
 - 단, 소규모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연면적 300㎡미만)인 경우 국비 지원 가능한 총사업비 한도는 400만원/3.3㎡이고, 서울·중앙·공공은 200만원/3.3㎡(400만원×50%), 그 외 280만원/3.3㎡(400만원×70%)까지 국비 지원
 -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포함)의 경우 노임,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의 20% 할증하여 지원
 - 대상 사업 당 국비 지원 한도는 최대 7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50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기타 GR사업 관련한 용역, 공사, 이주비, 기반시설비용 등에 국비 지원 가능
 - 문주 등 건물 외 부분은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만 공사 가능하며, 공사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가능

Q6. 예를 들어 3층 건물 중 2층에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A. 복합용도 건축물 면적(전용면적) 중 사업대상 용도면적(전용면적) 비율이 50% 이상 시 또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의 주용도가 지원 용도일 경우, 전체건축물을 대상으로 100% 지원가능. 해당시설의 지원가능 용도 전용면적이 건축물 50% 미만은 지원불가

Q7. 설계사 및 시공사는 누가 선정하는지?

A. 해당 건축물을 소유·관리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선정

Q8. 민간소유의 건물을 취약계층 이용 용도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A. 임차한 건축물(준공 후 10년 경과)은 임차기간이 2029년 1월 1일 이후 까지 계약체결 된 경우 지원가능

- 단, 사업대상기관이 임차한 건축물이 복합용도인 경우, 임차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민간이 사용하는 타 용도 지원불가

Q9. 해당 공사를 올해 완공해야 하는지?

A. 올해 공사 완료가 원칙으로 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가 최소화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 다만, 사업규모 및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27.12.31.까지) 이월 가능

Q10. 공사 시 어린이집 등 운영을 위한 이주비 등 설계비와 공사비 이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은?

A. GR사업 관련한 용역, 공사, 이주비, 기반시설비용 등에 국비 지원 가능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GR 용역	설계, 감리비, 폐기물처리(석면처리 및 관련감리포함), 구조안전점검(내진성능 확보 검토 등), 설계공모대행 등	
GR 공사	공사(철거포함 가능), 관급자재 조달 등	
이주비	임시공간 임차비용 ¹⁾ , 이사비용 ²⁾	차량운행비(통학,출퇴근), 집기류 등 지원불가
기반시설 ³⁾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 증설관련 비용 등	기반시설비용이 GR 공사비보다 큰 경우 지원 불가
안전 관련 비용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⁴⁾ , 해체계획서 작성비 ⁵⁾ 등	

1) 병원의 경우, 공사 진행을 위한 재실환자 이송 인건비 지원가능

2) 공사범위에 기존 숙소가 포함된 경우, 임시 숙소 임차료 지원 가능

3) GR공사와 관계없는 소방시설 신설 및 변경에 따른 공사비는 지원 불가

4)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 근거하여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함

5)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3항에 근거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는 경우 해체 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함

※ 이주비의 경우, 공사기간 이외의 집행 내역은 정산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Q11.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및 사업공모 신청서에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선정 조건은?

A. 전문기관(GR종합사업지원업체)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에 반영 가능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기술요소
에너지공사	필수공사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기계, 전기 등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공사	Cool Roof(차열도료),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선택공사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창호기밀 절수형 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추가지원	부대공사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확보 검토 등),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단,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등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지원가능(ex.친환경 건축 공법 및 자재, 국산 목재 사용,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 등)

- 에너지공사 중 **필수항목이 최소 2개 이상 적용**(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 포함)하여 사업 신청 및 지원
- 전문기관(GR종합사업지원업체)은 GR사업건축물별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아래의 컨설팅 우선 검토 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신청함

<GR종합사업지원 및 설계·공사 우선 검토순위>

- ① 필수공사·선택공사를 적용하여 에너지성능개선(절감률)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
 - * 에너지 절감률 30% 이상을 목표로 추진, 미달성 사업지의 경우 사유서 제출 필요
- ② 추가지원 가능 공사 중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적용 검토
(GR컨설팅 내역에 “석면조사 필요”가 표시된 경우, 석면조사 필수 신청)
- ③ 추가지원 가능공사 중 나머지 항목을 적용 검토

Q12. 사업공모 신청서에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선정 이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한지?

A. 지자체에서 설계 발주 후, 현장 여건에 따라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중대한 변경*은 사업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변경 신청 시,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 제출이 필요하며, 필요시 GR종합사업지원업체 자문 가능

* 중대한 변경: 에너지공사 사업비의 비율이 20%이상 감소하거나 필수공사 적용 계획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동일 필수 공사 내의 변경에서 에너지 성능 확보가 동등 이상의 경우 제외한다.

** 국비 지원 금액 증액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불허

*** 중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나 추가 금액을 GR 사업대상기관이 부담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을 자체처리 가능. 단, 사업준공 및 정산보고시 변경내용을 일괄로 보고

Q13. 사업공모 선정 이후 사업 취소 가능여부?

A.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취소 승인 절차를 득한 후 사업 취소가 가능하며, 단순 취소 시 차년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선정 배점기준표 “사업관리”에 단순 취소에 대한 배점 기준 참조

Q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자체·중앙행정·공공기관) 별로 사업비 전용이 가능한지?

A. 사업비 전용 가능. 단,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변경 심의 절차 진행 필요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신청하고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자체·중앙행정·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단위* 별로 사업비 전용**이 가능함

* 기초 지자체 단위, 중앙행정 - 해당 행정기관, 공공기관 - 해당 공공기관

** 단,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변경 절차 진행 필요

※ 예) 서울시 송파구 A 건물 사업비 100백만원(국비기준), B 건물 사업비 200백만원(국비기준)으로 총 300백만원으로 최초 사업비 결정 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변경을 통해 A 건물 사업비를 150백만원(국비기준), B 건물 사업비를 150백만원(국비기준)으로 변경하여(총액 변동없음) 사업 추진

Q15. 그린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외장재를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A.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단을 받아 진행 필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부 칙 <대통령령 제25786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수선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